고등 ·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이태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196

발의연월일: 2022. 9. 2.

발 의 자:이태규・권성동・金炳旭

김승수 · 노용호 · 류성걸

서병수 · 성일종 · 송석준

송언석 · 정경희 · 조경태

조해진 • 하영제 의원

(14인)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이끌 미래 인재양성을 위하여고등교육의 전면적인 체제 개편이 요구되고 있으나, 대학은 10년 이상의 등록금 동결, 학령인구 급감 등 재정난 심화로 변화를 위한 동력을 창출할 여력이 없는 실정임.

그런데 교육부에 따르면, 시·도교육청별로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최근 세수 확대로 2021회계연도 정산분 5.3조원, 2022년도추경예산 11.0조원 등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고등교육재정과의 투자 불균형 해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보통교부금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교육세 세입액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고등·평생교 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고등교육 재정의 획기적 확충과 유치원, 초·중등학교와 고등교육에 이르는 인재양성 생애주기 전반의 투자 불균형 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 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다른 회계 및 기금 으로부터의 전입금, 차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함(안 제4조).
- 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수행, 신기술 분야 등 국가 인재양성 사업 수행, 직업교육 등 대학의 평생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수행 및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재양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함(안 제5조).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태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1719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171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3년도 세입예 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고등 •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대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이와 같은 수준 이상 의 학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및 그 부설연구소
 -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 주의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설치된 대학병원 또는 대학 치과병원 및 그 부설연구소
- 제3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교육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6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2.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3. 제7조에 따른 차입금
- 4.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 1. 대학의 교육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 2. 신기술 분야 등 국가 인재양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 3. 직업교육 등 대학의 평생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 4.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재양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 5. 제7조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 6. 그 밖의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 제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 회계에 전입한다.
 - ② 정부는 제5조의 사업을 위하여 제1항의 전입금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 제7조(차입금) ① 특별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있다.
 - ② 특별회계는 그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

하여야 한다.

-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9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 제10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